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기본계획의 계절 요건 삭제 >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200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1
1.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기본계획의 계절 요건 삭제 (안 제3조제2항제7호)	2

I. 제안경위

2025년 12월 12일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8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최근 건설경기 불황 및 침체가 계절과 관계없이 지속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할 때, 특정 계절에 한정된 고용안정 대책 수립은 문제가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 절기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제7호).

Ⅲ. 검토의견

1.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기본계획의 계절 요건 삭제

(안 제3조제2항제7호)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함으로써 계절에 관계없이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시행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7호).

현 행	개 정 안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생략)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7.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8. (생략)	8.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 단위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8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¹⁾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한 것은 건설업이 기상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으로, 겨울철 한파·강설 등으로 공사 진행이 제한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건설현장의 공사 물량 감소로 일용직 중심의 건설근로자에게 계절적 실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이에 과거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이 주로 동절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동절기 공공공사 확대, 직업훈련 지원 등 겨울철 실업 완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대응이 추진되어 왔으며,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이 법률상 기본계획에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항목으로 반영된 것으로 이해됨.

참고로,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²⁾ 건설근로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촉진하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6. 1.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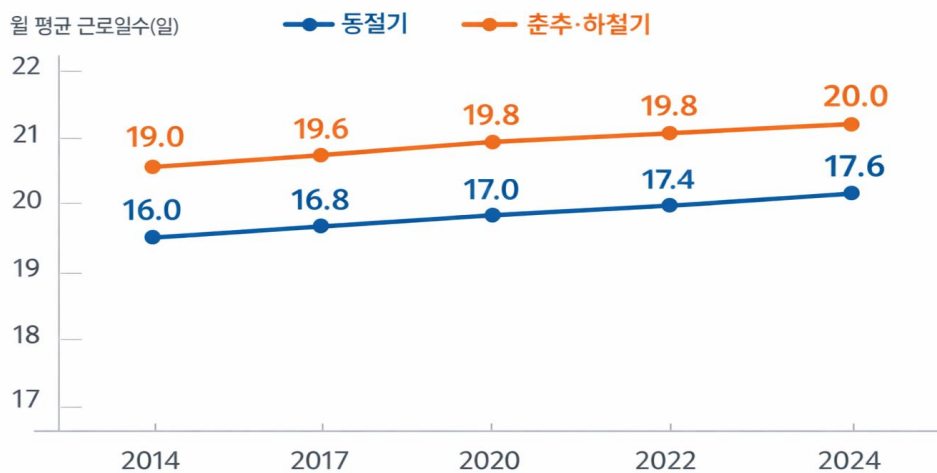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9. 11. 26.>

1.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고용 동향에 관한 사항
3. 건설근로자의 고용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설기능인력 양성 등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관한 사항
5.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6. 임금·휴일·휴가 및 근로시간 등 건설업의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한 사항
7.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8. 건설업 분야 인력수급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공제회,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24.8.

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는 동절기 17.6일, 춘추·하절기 20.0일 수준으로, 겨울철에는 기상조건 등의 영향으로 근로일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과거 조사와 비교할 때, 동절기 근로일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계절 간 근로일수 격차도 다소 완화되는 경향이 확인됨.

건설근로자 월 평균 근로일수 추이



자료: 각 연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그러나 최근에는 건설경기 침체, 고금리 및 공사비 상승, 부동산 경기 둔화 등으로 공사 물량 감소가 계절과 관계없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건설근로자의 고용 불안정 또한 특정 절기에 한정되기보다는 연중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대책을 특정 계절에 한정하기보다는 건설경기 변동 및 공사 물량 변화 등 산업 여건 전반을 반영한 종합적인 고용안정 정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³⁾

이에 개정안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가 계절과 관계없이 지속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특정 계절에 한정되지 않는 종합적인 고용안정 정책을 추진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이를 통해 계절 중심의 제한적 고용안정 대책에서 벗어나 건설경기 변동, 공사 물량 감소, 건설현장의 구조적 고용불안 등 다양한 요인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2025년부터 2029년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⁴⁾이 시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 규정이 시행된 후 새로 수립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현재도 기본계획 수립 시, 동절기에 국한하지 않고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 중이며,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 고려 시, 특정 계절이 아닌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3) 대한경제, “노동부는 왜 ‘겨울철’ 건설근로자의 고용만 신경썼을까?”, 2021.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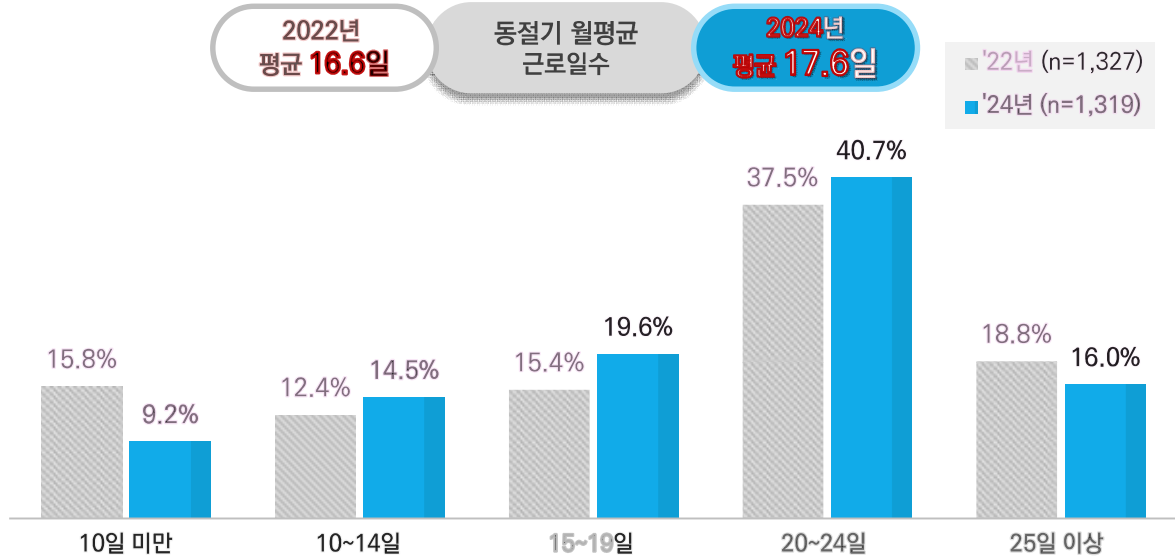
4) 고용노동부,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 2025.2.27.

문 의 처
02)6788-55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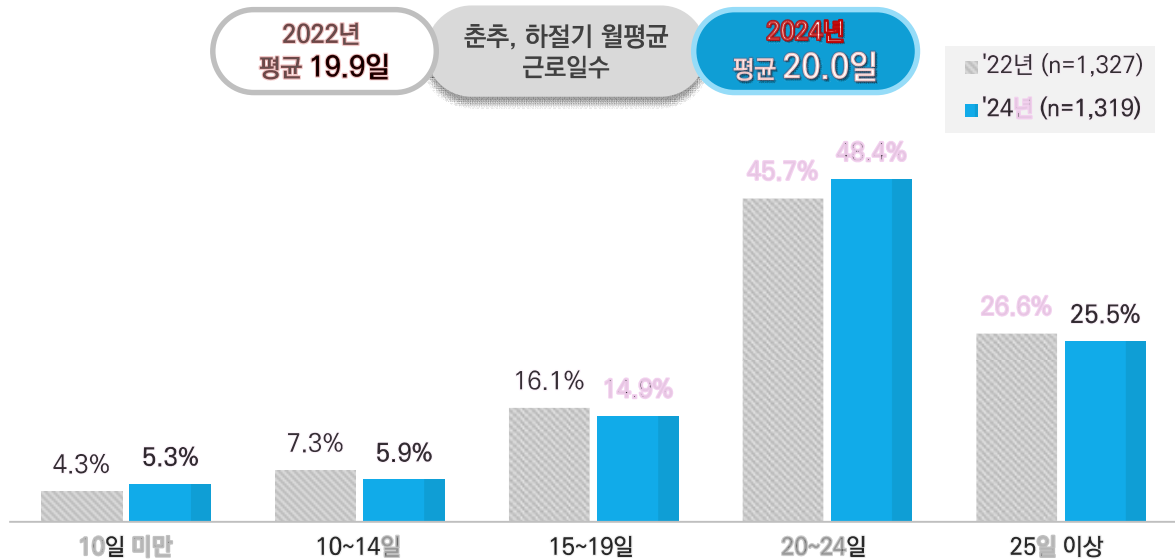
참고

건설노동자 동절기 및 춘추, 하절기 월평균 근로일수

(단위 : %, 일)



(단위 : %, 일)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24.8.